□ 부서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1 정책기획담당관 외 전 부서	○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비 (의견서 p.16)**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6.6%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고려치 않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 등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예산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음. -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요청 해주기 바람	- 향후 예산편성시 요구사업에 대하여 시행 가능성, 사업 물량 등 세부사업계획 시기 등의 상세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2 토목과, 안전치수과 등 설계변경이 있는 전 부서	○ **입찰계약공사의 설계 변경 과다 (의견서 p.18)** - 공사 분야의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1건당 설계변경 횟수가 상당히 많거나, 설계변경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이 경우 공사금액증감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음. -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향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 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하고 설계변경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겠음. (자치행정과) - 공사발주 설계내역에 예상되는 공종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규공종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물량조정하여 사업완료하겠음. (토목과)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설계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규정을 준수하여 불분명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겠음. (안전치수과) - 기존 3년~5년간의 처리량과 향후 처리량의 추계를 통해 용역기간 중에 가급적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청소행정과)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3 사고이월이 있는 전 부서	○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 (의견서 p.20) -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대부분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미 의견제시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사업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고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하며, 사업기간연장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 외부재원 확보시에도 가급적 상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회계연도 기간 내 사업완료하고 불가피한 사고이월사업은 차기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겠음. (토목과) - 향후 공사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고,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음. (푸른도시과) - 사업계획 수립시 사고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을 철저히 하겠음. (안전치수과) -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해당월의 처리량 산정에 따라 익월에 처리비를 지급하는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최소화하겠음. (청소행정과) -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충분한 현장 확인 및 사전 검토를 거쳐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교통관리과) - 메르스(MERS)대응으로 인해 2015년 11월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으로 업체 선정 및 에어텐트 제작에 40일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최소화하겠음. (지역건강과)
4 토목과 공사담당 전 부서	○ 입찰계약공사의 계약체결 부적정 (의견서 p.22) -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공사로써 발주부서(토목과)에서 2015.2.9.과 2015.2.25. 2회에 걸쳐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구분, 공사시기와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법령 위반임.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시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예산편성 계획부터 권역과 물량을 별도로 산정하고 당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발주·계약함으로써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토목과) - 단일공사 공사물량 분할계약 체결 금지하고 입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안전치수과)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5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정책기획담당관	○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 철저 (의견서 p.24)** - 연간단가계약공사는 물량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물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음. -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업무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도 해당 공사의 물량추계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연간단가계약사업 본예산 편성 시 해당 공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공사물량 등 추계를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 매년 반복되는 정비물량을 감안 사업비 대비 5년 평균치를 수렴하여 수량산출의 적정성확보하고 각 공종별 인과관계에 의거 자재 등의 적정한 산출기초 수립하며, 예산편성 산출 및 반영시 차기 연도 적정한 공사물량이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겠음. (토목과) - 연간단가 공사 물량추계 철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겠음. (안전치수과) - 예산편성 시 연간단가 작업물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음. (푸른도시과) - 2017년도 연간단가 계약공사 추진 시 추정치 공사물량은 과거 5년간 시공한 공정 및 물량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불필요한 공정은 삭제하여 물량 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음. (교통행정과)
6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교육지원과 외 14개 부서 (이월사업발생 부서)	○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실적부진 (의견서 p.26)** - 이월사업비 주된 발생 사유는 보조금 등의 교부지연과 설계변경, 철거대상 건축물의 보상협의 지연, 기타 학사일정 관련 등으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함. - 기확보된 예산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요청하며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 향후 사업계획을 사전에 더욱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 요청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겠음. (자치행정과) -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문화재청 승인, 수시 자문 등의 절차로 여타 건설공사의 소요 기간보다 길어져 사고이월 사업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문화체육과)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 예산확보 단계에서 사업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예산편성요구하고 외부재원 등의 예산확보 시 사전 충분한 논의와 협업을 시행하여 상반기 중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음. (토목과) - 이월사업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하반기에 사업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안전치수과) -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충분한 현장 확인 및 사전 검토를 거쳐 이월사업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교통관리과) - 2015년 11월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으로 업체 선정 및 에어텐트 제작에 40일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2월 19일 집행 완료하였음. (지역건강과) -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5.12.31.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명시이월 최소화하겠음. (청소행정과)
7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안전치수과, 의약과, 교통관리과, 정책기획담당관 등 전 부서	**○ 사업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의견서 p.28)** - 사업예산전액이 불용된 경우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사업계획변동 등으로 예산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 - 사업예산의 불용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시 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조치하여 예산집행과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가능성(예산확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어르신복지과) - 예산편성 시 부서요구서 검토과정에서 사업시행 가능성,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 하도록 할 것이며,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파악하여 감추경을 통해 예산집행 및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8 정책기획담당관 외 전부서	○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문제점 (의견서 p.30)** -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시기, 물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잔액도 더 많이 발생함. -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의 시행 가능성, 시기, 사업물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 예산편성 시 부서요구서 검토과정에서 사업시행 가능성, 시기, 사업물량, 전년도 집행액 등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9 각종 공사가 있는 전 부서	○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필요성 검토 (의견서 p.32)** - 설계용역은 사업계획상 공정이 많고,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공사의 난이도 등이 높을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나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설계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을 커쳐 발주한 사업도 설계변경 건수는 감소하지 않음. 또한 설계용역 소요기간 및 계약관련 사전절차로 시급한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 각종공사 발주부서는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시에도 기간을 단축하여 해당공사가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관련하여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해당 공사가 적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자치행정과) - 공사발주 설계시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수행하겠으며 부득이 교량 등의 안전설계 등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음. (토목과) - 설계용역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해당공사 적기에 시행하겠음. (안전치수과)
10 정책기획담당관	○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사용) 부적정 (의견서 p.34)** -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시·구 매칭 구비 부담금과 기초연금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의 예비비 사용제한(예비비의 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비로 이를 지출할 수 없음. -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집행하기 바람.	-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시·구 매칭 구비 부담금과 기초연금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반 규정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예비비 취지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11 세무2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	○ **세외수입(법규위반과태료등) 체납액 징수 철저 (의견서 p.36)** - 세외수입총액(41,264백만원, 특별회계 포함)이 구 전체 세입총액(429,655백만원)의 9.6%를 점유하고 있어 세출예산 재원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법규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함. -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징수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나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분기별(2,5,8,11월) 현년도체납 정기이관을 철저히 하고, 신용등급 1~6등급의 실익있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하는 등 체납실태 분석 및 현장방문하여 징수독려하겠음. (세무2과) - 체납징수 전담반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자 납부독려) 하고, 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장 일제발송,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검토 등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하겠음. (건축과) -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겠음. (푸른도시과) - 세외수입(자동차종합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등) 현년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철저히 하여 미송달로 인한 부과취소 및 압류해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 차량 말소 후 대체 압류를 철저히 하여 채권확보 누락이 없도록 하겠음. (교통행정과) -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기간 정기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율 제고하겠음. (교통관리과)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독촉 고지, 공시송달 등의 징수절차 준수 철저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하겠음. (지역건강과)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방안(부서별 답변내용)
12 어르신복지과, 정책기획담당관, 위탁사업이 있는 전 부서	○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견서 p.38)** - 안산자락길 행복나눔이 외 7개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이를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직원 부족과 수탁업무과중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대상자에 대한 현지답사 확인 등이 어려워 부정수급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환수조치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위 8개 위탁사업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참여인원 모집(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수급사례가 있을 경우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부정수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을 통해 사업참여자의 자격변동 및 부정수급 사항을 정기적을 확인하는 등 사전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어르신복지과) - 민간위탁 담당부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관리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13 안전치수과 정책기획담당관	○ **홍제천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 분석 (의견서 p.40)** - 홍제천 유지관리용역비와 시설비는 시간이 갈수록 각종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천시설물정비를 포함한 하상여과시설, 전기·기계분야시설 등 홍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서울시로부터 위 용역비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기간이 경과 될수록 홍제천 유지관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음. 증가하는 예산 충당을 위해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및 시비 확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정책기획담당관) - 홍제천 하천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겠음. (안전치수과)